

#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06 - 13 |
|----------|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2006년 4월 12 일

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, 의정활동비, 여비,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그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 시행됨으로써,
-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서 「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 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개정함
-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함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9조)
-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 및 지급일을 규정함(안 제2조)
  - 의정활동비 : 연 13,200천원(월 1,100천원)
  - 월 정 수 당 : 연 16,992천원(월 1,416천원)
  - 지 급 일 : 거창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
- 출석일수 계산 조항을 삭제함(안 제3조)
-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여비지급기준을 규정함(안 제7조 별표1)
  - 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의장·부의장 여비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)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조례 제 호

##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1조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3항을 신설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) ①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

③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은 거창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6조 “회의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 “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,000원을 지급한다”를 “월정수당은 월 1,416,000원으로 한다”로 한다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여비지급 기준) 국내외 여비는 별표1, 2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9조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7조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철도<br>운임 | 선박<br>운임 | 항공<br>운임 | 자동차<br>운임 | 현지<br>교통비<br>(1일당) | 숙박비<br>(1야당) | 식비<br>(1일당)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원  | 1등급      | 2등정액     | 정액       | 정액        | 20,000             | 46,000       | 25,000      |

비 고

-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철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[별표2]

국외여비지급 기준표(제7조 관련)

(단위 : 미화불)

| 구 분        | 철 도<br>운 입   | 선 박<br>운 입  | 항공<br>운입      | 자동차<br>운 입 | 일 비<br>(1일당) | 숙박비<br>(1야당) | 식 비<br>(1일당) | 준 비 금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5일<br>미만 | 15일<br>이상<br>30일<br>미만 | 30일<br>이상 |
| 의 장<br>부의장 | · 2등급 이<br>상의 등급<br>구별이 있는<br>경우에는<br>최상등급의<br>철도임   | · 2등급 이<br>상의 등급<br>구별이있는<br>경우에는<br>최상등급의<br>선임  | 1 등<br><br>정액 | 실비액        | 가등급<br>25    | 가등급<br>130   | 가등급<br>107   | 140       | 170                    | 195       |
|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나등급<br>25    | 나등급<br>90    | 나등급<br>78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다등급<br>25    | 다등급<br>72    | 다등급<br>58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라등급<br>25    | 라등급<br>62    | 라등급<br>49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의 원        | · 등급구별이<br>없는 경우에는<br>그 승차에 요<br>하는 실비액<br><br>· 공무상의<br>사유로 인하<br>여 급행요금<br>또는 침대<br>요금을 필요<br>로 하는 경<br>우에는 그<br>실비액 | · 등급구별이<br>없는 경우에는<br>그 승선에 요<br>하는 실비액<br><br>· 공무상의<br>사유로 인하<br>여 침대요금<br>을 필요로<br>하는 경우에<br>는 그 실비액 | 2 등<br><br>정액 | 실비액        | 가등급<br>20    | 가등급<br>114   | 가등급<br>81    | 130       | 155                    | 180       |
|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나등급<br>20    | 나등급<br>74    | 나등급<br>59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다등급<br>20    | 다등급<br>55    | 다등급<br>44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라등급<br>20    | 라등급<br>46    | 라등급<br>37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비고 :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국가공무원 국외여비규정중 비고 1, 2에 의거 지급한다.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 등급 : 뉴욕, 런던, 파리, 스톡홀름, 동경, 홍콩

나. 나 등급 :

(1) 아세아주, 대양주 : 일본, 파푸아뉴기니아

(2) 남, 북아메리카주 : 워싱턴, 로스엔젤레스, 샌프란시스코, 트리니다토바고, 자메이카

(3) 유럽주 :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 
스위스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

(4) 중동, 아프리카주 :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가봉, 중앙아프리카, 카메룬,

우간다, 코트디부와르, 니제르, 자이르, 수단

**다. 다 등급 :**

- (1) 아세아주, 대양주 : 인도, 터키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필리핀, 타이, 중화민국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
- (2) 남, 북아메리카주 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아이티, 바베이도스, 브라질, 칠레, 수리남
- (3) 유럽주 : 덴마크, 아일랜드, 포르투갈,希臘
- (4) 중동, 아프리카주 : 요르단, 바레인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이라크, 리비아, 이집트, 케냐, 나이지리아, 세네갈, 라이베리아, 모리타니아, 시에라리온, 이디오피아, 부르키나파소, 모리시어소

**라. 라 등급 :**

- (1) 아세아주, 대양주 : 인도네시아, 버마, 스리랑카, 히지, 네팔
- (2) 남, 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도미니카공화국, 콜롬비아, 베네수엘라, 에쿠아도르, 페루, 볼리비아, 우루과이, 파라과이, 아르헨티나
- (3) 유럽주 : 해당국가 없음
- (4) 중동, 아프리카주 : 레바논, 북예멘, 모로코, 튀니지, 르완다, 말라위, 스와질랜드, 가나, 소말리아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u>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지급)①의정활동비는 의회에 소속된 의원에게 지급하되 거창군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 <p>② 회기수당은 회기중 의회의 회의(“위원회 회의 회의”를 포함한다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관공서의 동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3조(출석일수 계산)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</p> | <p><u>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월정수당</u>-----</p> <p>----- 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지급)①의정자료의 수집 ·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③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은 거창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 <p>(삭제)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지 못하거나, 후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.</p> <p>제6조(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, 2 (생략)</p> <p>②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,000원을 지급한다.</p> <p>제7조(여비지급기준) 국내·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의장, 부의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, 의원은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한다.</p> <p>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거창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</p> | 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, 2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월정수당은 월 1,416,000 원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여비지급 기준) 국내외 여비는별표1, 2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 <p>제9조(준용)-----<br/> -----월정수당<br/> -----<br/> -----.</p> |